



**「2026년 수출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홍보 콘텐츠 제작 용역」
과업이행요청서**

2026. 5.

(재)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

[글로벌성장본부 수출마케팅팀]

목 차

I. 과업 개요	1
II. 세부 과업 내용	2
III. 과업보고	5
IV. 과업 수행지침	5
V. 성과품 납품 및 검수	8
VI. 대금지급	11

I 과업 개요

1. **과업명** : 2026년 수출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홍보 콘텐츠 제작 용역
2. **과업기간** : 계약체결일 ~ 2026년 12월 4일
3. **과업예산** : 금485,000,000원(금사억팔천오백만원, 부가가치세 포함)
4. **계약방법** : 전자입찰(총액), 제한경쟁입찰(실적제한, 중·소기업·소상공인), 협상에 의한 계약

5. **과업대상** : GMS(GBC Marketing Service) 등재기업 550개사 내외
※ GMS : GBC(발주기관 해외사무소)를 활용한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마케팅 대행 사업

6. 추진배경

- 글로벌 공급망 교란 및 세계 경제 불확실성 심화로 수출 대외환경이 악화됨에 따라,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필요성 대두
- 도내 기업의 해외 마케팅 콘텐츠 제작을 통한 경기도 기업 브랜딩 및 글로벌 진출 기반 구축

7. 추진목적

- 경기도 수출 중소기업의 온라인 해외 마케팅을 통합 지원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 구축 및 수출 진입장벽 완화

8. 주요 과업내용

- 도내 수출 중소기업 홍보 영상 제작
 - 수출 유망지역 및 품목별 분류에 따른 홍보 영상 총 10편 내외 제작
 - 유망지역 현지어 기반 제작 후 영어, 한국어 등 자막 추가
- 제작 영상 기반 온라인 홍보
 - 유망지역 현지 인플루언서 및 도내 유학생 활용 온라인 홍보
 - 국가별 주요 SNS 플랫폼에 홍보 영상 배포 및 마케팅 진행

II 세부 과업 내용

1. 과업 수행 기본방향

- 수행사는 경기도내 수출기업과 발주기관 지원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동영상 기획·제작·업로드, 홍보처 섭외·관리, 자료 번역, 성과분석, 결과보고 등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,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

2. 과업 범위

가. 홍보 영상 기획 및 제작

- 홍보 영상 제작의 목적, 의미, 방향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, 이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·분석한 후 기획을 진행하여야 함
- 기획·제작 책임자(PD)는 유사 용역 수행 실적이 있는 전문 경력자로 구성하며, 착수부터 최종 납품까지 동일 인력이 지속 참여하여야 함
- 시나리오 및 영상 제작은 반드시 과업수행자와 발주기관 담당자 간 사전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함
- 영상 제작을 위해 필요한 취재, 사진 및 영상 촬영, 원고 작성, 편집, 자막 제작, 썸네일 제작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
- 촬영 장비는 영상 내용 및 촬영 환경에 따라 4K UHD급 이상의 고화질 카메라, 드론, 짐벌 등 다양한 전문 장비를 활용하여 영상미를 제고하여야 하며, 더빙이 필요한 경우 전문 녹음 시설을 이용하여야 함
- AI, CG 등 디지털 제작 기술을 적절히 활용하되, 영상의 자연스러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여야 함
- 영상 구성은 GBC와 GMS 사업을 소개하고 우수기업 제품 및 성과를 홍보하는 방식으로 기획하여야 함

※ 영상별 우수기업 3개사 내외 중점 홍보 후 영상 후반에 분류별 전체 등재기업명 게재

- 모든 영상의 도입부는 GBC 전체 진출지역 현황 및 소개, GMS 사업 소개, 전체 등재기업명 게재 순으로 공통 구성하고, 이후 각 영상의 해당 진출지역 세부 내용으로 연결되어야 함
- 기업 진출지역 및 품목에 따른 10개 분류별 홍보 영상을 제작하되, 아래 분류는 영상 제작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

순 번	진출지역	유망품목
1	중국	레저용품, 생활용품, 헬스케어, 화장품
2	동아시아	식품, 화장품, IT, K-POP 상품, 가전제품
3	동남아시아 1	헬스케어, 유아용품, 4차산업, 실버제품
4	동남아시아 2	환경제품, 아동·장애인 교육제품, 의료, IT
5	중앙아시아	위생용품, 세탁제품, 소형가전, 식품, 미용제품
6	인도	화장품, 미용제품, 식품, 전자제품
7	북아메리카	스포츠 용품, 유아용품, 골프용품, 의료
8	남아메리카	미용제품, K-POP 상품, 반려동물 용품, 주방용품
9	유럽	레저용품, 헬스케어, 식품, 의료, 화장품
10	신시장	위생용품, 할랄인증 식품, 반려동물 사료, 액세서리

- 분류 지역 출신 외국인 인플루언서가 출연하여 영상을 진행하고, 해당 지역 출신 도내 외국인 유학생이 리포터로 출연하여 일부를 진행하도록 함
- 현지어 기반으로 제작 후 영어, 한국어, 기타언어를 자막으로 삽입하여야 함
※ 기타언어 : 진출지역이 대륙으로 분류된 경우 영상 기반언어로 채택된 지역 외 국가의 언어
- 편당 5분 내외 영상과 1분 내외 요약형 숏폼 버전으로 병행 제작하여야 함

나. 영상 기반 온·오프라인 홍보

- 현지 인플루언서 및 도내 유학생의 SNS에 영상을 게재하고 홍보하여야 함
- 영상 분류 지역별 주요 SNS 플랫폼에 홍보영상을 배포하여야 함
- 해외 바이어 접근성이 높은 국내 온라인 플랫폼(GBC prime, KOTRA buyKOREA 등)에 영상을 게재하여야 함

- 영상 게재 시 검색엔진 최적화(SEO)를 고려한 제목·본문·키워드 등을 구성하여 온라인 노출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함
- 국내 유동인구 밀집지역 및 무역·수출 전문 컨벤션 시설 등에 오프라인 영상을 상영하여야 함

다. 기업 홍보자료 번역

- 우수기업 30개사 내외의 기업 홍보자료를 외국어로 번역하여야 함
※ 홍보자료 : 기업이 보유한 한국어 E-카탈로그, 브로슈어 등
- 우수기업 중 번역을 희망하는 기업에 한하여 지원하며, 해당 기업의 분류 지역 언어 및 영어 총 2개국어를 번역하여야 함
- 번역 검수는 해당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도내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하고, 계약금액 내에서 검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함

라. 기타 일반사항

-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진행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협의를 통해 조치를 취할 수 있음
- 수행사는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전담인력을 지정·배치하여야 하며, 전담인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봄
- 영상 제작 및 홍보 시 콘텐츠는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수준의 평이한 문장과 가독성 높은 구성으로 작성하여야 함
- 사진, 일러스트, 폰트 등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 문제가 없어야 하며, 분쟁 발생 시 수행사가 책임을 짐
- 본 사업 수행에 따라 제작된 모든 콘텐츠, 원본자료, 편집자료, 산출물 등은 발주기관에 귀속됨
- 과업 종료 후 12개월 간 유지보수를 진행하여야 함

III

과업보고

1. 착수보고

- 수행기관은 과업 수행계획, 추진일정, 수행조직, 인력배치, 보고체계, 콘텐츠 운영방안 등을 포함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

2. 수시보고

- 발주기관이 요청한 경우 과업 추진현황, 배포·게재 실적, 성과지표, 통계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함

3. 월간보고

- 수행기관은 매체전략 및 활용매체, 배포계획 및 실적, 콘텐츠 조회수·열람수 등 성과지표, 주요 열람자 특성, 국가별 반응, 전략별 효과등을 분석하여 월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
- 월간보고서에는 문제점 및 개선사항, 향후 추진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함

4. 최종보고

- 과업 종료 시 월별 종합 실적, 전체 성과분석 및 통계자료, 국가별·매체별 실적, 주요 우수사례 등을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

IV

과업 수행지침

1. 일반사항

- 본 과업이행요청서는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, 모든 과업은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따라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기관의 관련 규정 등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.

- 수행사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, 착수 전 과업수행계획서, 수행조직도, 참여 인력 명단 및 이력서, 보안각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수행사는 제안서에 명시된 핵심인력을 우선 배치하여야 하며,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대체하고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발주기관은 과업 참여 인력 중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수행기관은 지체 없이 교체 요구를 받아들여 부적격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.
- 수행사는 과업 수행 중 사정에 의해 과업 추진 내용이나 절차, 방법 등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그 방침에 따라야 한다.
- 과업 추진 중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행사는 관련 내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며, 발주기관의 의견을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수행사는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행정비용, 물류비용, 기술비용, 자료수집비용, 촬영비용 등 부대비용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부담하여야 한다.
- 수행사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에 따른 민·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.
- 성과품의 하자, 계획의 불완전, 조사 착오, 결과물의 오류 등으로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발주기관은 제출된 성과품의 품질, 적정성, 증빙자료의 충실성 등을 검토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수행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- 본 과업이행요청서의 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.

2. 품질관리 및 검수

- 수행사는 영상, 이미지, 배포자료 등 모든 성과물에 대하여 자체 검수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, 오탈자, 사실오류, 링크오류, 저작권 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콘텐츠의 품질 수준이 현저히 미흡하거나 과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은 수정·보완 또는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.
- 배포실적, 조회수 등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제출하여야 하며, 허위 또는 과장 제출이 확인될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.

3. 보안사항

- 수행사는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- 본 과업과 관련된 서류, 자료, 성과물은 본 과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,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.
- 과업참여자의 변경 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과업내용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하며, 변경사항은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수행사는 과업 수행 중 취득한 비공개 자료 및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, 과업 종료 후 발주기관 지시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.
- 보안의무 불이행으로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 수행사는 이에 따른 민·형사상 책임을 진다.

4. 저작권 및 권리귀속

- 본 과업을 통하여 제작된 모든 성과물, 산출물, 원본자료, 편집본, 보고서, 2차 가공물의 소유권 및 저작재산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.
- 수행사는 제3자의 저작권, 초상권, 상표권, 특허권 등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, 관련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수행사에 있다.
- 외부 기획자, 촬영자, 출연자, 성우, 번역가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발주기관이 성과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권리관계를 사전에 정리하여야 한다.
- 발주기관은 납품된 결과물을 수정, 편집, 재배포, 재사용할 수 있으며, 수행사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
V 성과품 납품 및 검수

1. 성과품 납품

- 콘텐츠 제작 및 배포 관련 보고서 1부
- 온라인 파일 일체 제출
 - 홍보 영상 산출물 원본 파일(한국어 자막만 삽입된 영상 별도 제출)
 - 영상 업로드 및 배포, 게재 증빙자료
 - 배포 링크 및 건수 정리 엑셀파일
 - 영상 오프라인 게재 증빙자료 및 건수 정리 엑셀파일
 - 기업 홍보자료 번역 산출물 원본 파일
 - 이미지, 자막, 썸네일 등 부속자료
-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
- 성과품 납품 시 저작권 및 활용권 이전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

2. 검수

- 최종 성과품 납품 후 발주기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검수를 실시하며, 필요 시 내·외부 검수자를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
- 검수 결과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함

VI 대금지급

1. 지급 조건

- 대금은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[행정안전부예규 제332호, 2025.7.8.] 제1장 제2절 ‘선금 및 대가 지급’에 따라 지급함

2. 지급 시기 및 방법

- 세부 지급 시기, 횟수 및 방법은 관계 법령과 계약예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 체결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. 끝.